

6. 住宅建設時期 調整 指示

資料提供：建設部

1. 정부는 '91. 5. 3 건설경기 진정대책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건설경기 과열에 따른 자재·인력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건설사업 공사기간조정, 상업용 건물의 건축제한, 주택건설의 조정 등을 통하여 건설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시멘트, 철근, 골재 등 건축자재 수급 원활

화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민영아파트착공을 '91. 9월말 이후 연기하고 공공부문 주택건설 물량을 분기별로 평준화하는 등 다음과 같이 지침을 시달하니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는 이 지침 시행일 현재 각 시단위로 10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 미분양이 발생하였거나 지침 시행일 이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당해 시에서 일반분양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 바람.

1)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착공하지 않은 사업은 '91. 9월말 이후로 착공을 연기

2) 사업계획승인 신청중이거나 향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는 사업은 '91. 9월말 이후에 착공한다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3) 택지면적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은 변경되는 사업분에 대하여 '91. 9월 이후에 착공토록 조건부 변경승인 조치. 단, 미분양주택이 100세대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착공을 허용할 수 있음.

나.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의 공공부문 주택건설에 대하여는 연내 건설물량은 차질없이 추진하되 공사물량이 건설성수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기별로 평준화시켜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각 시·도 및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지역별, 주택유형별(영구, 근로자, 장기임대, 소형분양)로 분기별 착공계획을 '91. 5. 10까지 당부로 제출하여 주기 바람. 끝.

건 설 부 장 관